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이하는 가치

2026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KBIZ 중소기업중앙회

2026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Contents

Ⅰ. 제도 개요 04

Ⅱ. 세부 활용 방법 08

1. 지명경쟁에 의한 방법 09
2. 제한경쟁에 의한 방법 12
3. 조달청에 위탁구매하는 방법 14

Ⅲ. 자주 하는 질문(FAQ) 17

[참고 1] 관련 법령 20
[참고 2] 공동사업제품 등록 현황 25
[참고 3] 공동상표 등록 현황 27
[참고 4] 기관별 제도 활용 실적 28
[참고 5] 제도 활용 우수 사례 30
[참고 6]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활용 독려 공문 3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0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 제2항

02 왜 공동사업이 필요 했을까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구조적 한계
(예: 소량생산, 공공조달 입찰 인력 행정력 등 부족)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

제도 목적

1.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
2. 공동 판로 기반을 마련하여 소기업 성장 지원
3. 소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기술 공유 등)

제도 적용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
3. 공동사업제품으로 인정된 제품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음
   *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구매 시**
   :재경부 고시금액 2.3억 원 미만 구매 가능
   *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정보 조회** > **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확인 가능

* 중기업 이상은 적용 대상 아님

03 제도 활용 시 장점

소기업·소상공인 입장

1. 공공조달 진입 장벽 완화
2. 공동사업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 공유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장

1. 조합원사와 공동사업 수행으로 상호 간 협력 강화
2.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공동사업 품질 향상
3. 조합의 경쟁력 제고

구매기관(공공기관) 입장

1. 안정적 공급망 확보
2. 우수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3. 업체 탐색 등 행정비용 절감
4. 지역 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5. 상생·협업 기반 조달 실현
6.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

PART

I

제도 개요

2026

I 제도 개요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❶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❷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 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수요기관

•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등

적용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 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재경부 고시금액 2.3억 원 미만)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❶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❷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❸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❹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❺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세부 설명

공동사업명	사업 소개
협업사업 (협업승인제품)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R&D·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 역량 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 간 협력하여 참여기업 간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 지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동상표 (공동브랜드지원제품)	• **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자체 개발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특허청 상표등록 필요)**
특허권 (특허개발지원제품)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특허권을 적용하여 제품화**하고 특허권자의 기술이전을 통해 참여 기업이 우수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조합에서는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해당업체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며 특허 적용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사후관리 등을 실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공통기술개발지원제품)	• 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포함)**을 통해 개발한 혁신기술을 소기업·소상공인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공유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단체표준 (단체표준인증제품)	•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하는 표준**(「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 • 협동조합이 제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 표준에 대해 업체를 심사**하여, 일정 자격(설비·국제기준 부합 규정 보유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 발급 및 주기적 사후관리 심사 실시

구매 방식

❶ **지명경쟁:**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받아, 해당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 진행

수요기관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수요기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	• 요청정보 검색 • 추천신청 (입찰금액 기재)	•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 검토 • 적정업체 추천	• 지명경쟁 공고 (나라장터) • 낙찰자 결정 후 계약

❷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하여 구매 진행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수요기관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수요기관
•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 입찰 참여	• 낙찰자 결정 후 계약

❸ **조달청 위탁구매**

수요기관	조달청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조달청
•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 경쟁 등 명시)	•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 요청정보 검색 •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 (지명경쟁의 경우) 랜덤 추천방식 •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제도 활용 시 장점

우수품질 제품 구매 가능	•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 실시하는 우수품질 제품 구매 가능
구매절차 간소화	•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사회적 책임 실현	•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3~4)

PART

II

세부 활용 방법

2026

Ⅱ 세부 활용 방법

1. 지명경쟁에 의한 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받아, 해당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 진행
- 추천방식 ※ 발주처(수요기관) 선택사항

- (선착순 추천방식) 협동조합은 추천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선착순'으로 추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만큼 적정업체를 추천
- (랜덤 추천방식) 협동조합에서 추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 업체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의 3배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천 대상업체를 최종 선정**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확인

❶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❷ SMPP 서비스 '전체 메뉴' → ❸ '정보조회' → ❹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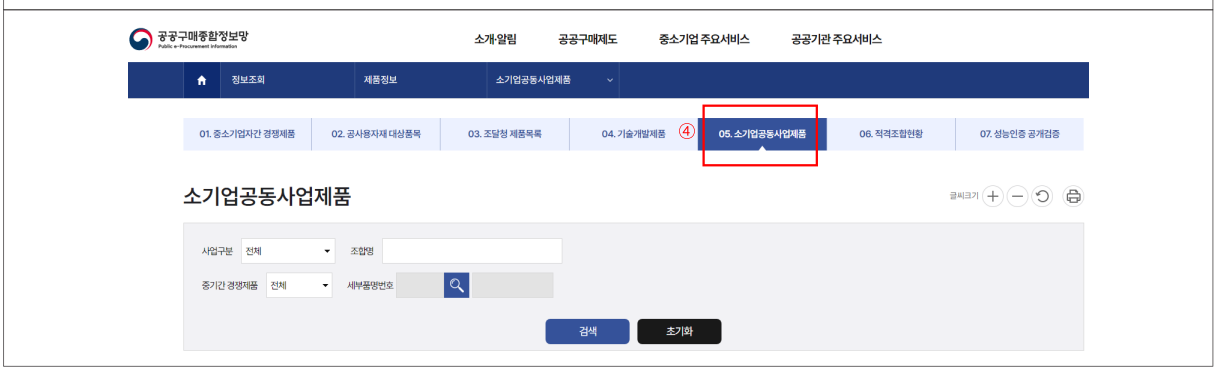

• **세부 활용방법 안내 매뉴얼**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및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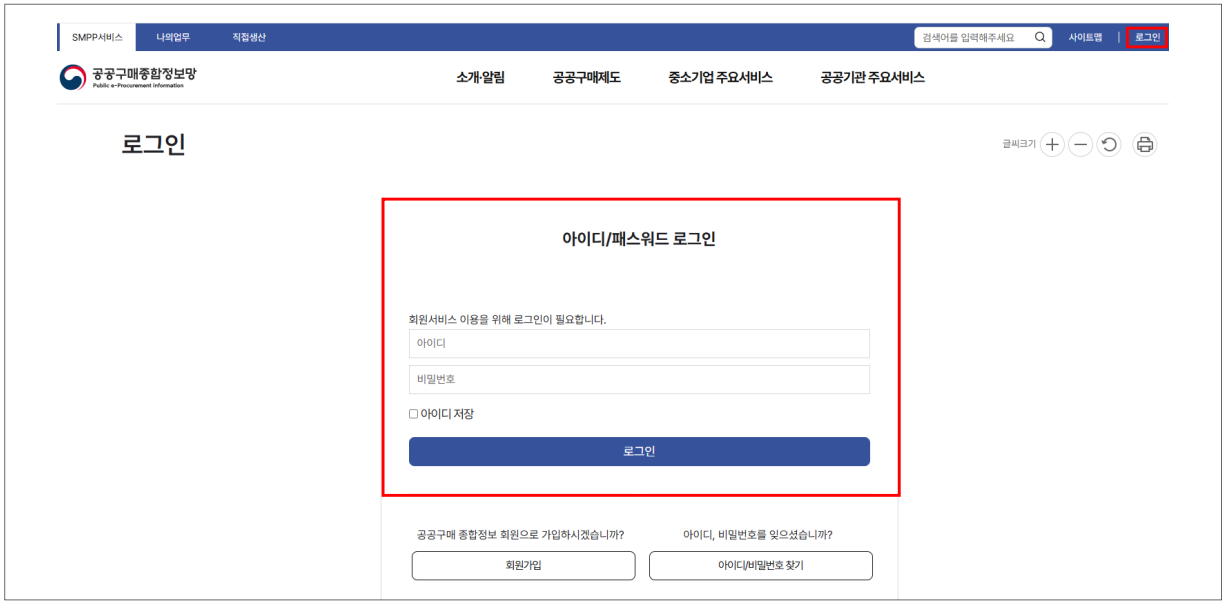

(2) ❶ '나의업무' → ❷ '공동사업제품 추천' → ❸ 추천희망 공동사업명 클릭 → ❹ '우선조달요청 등록'

(3) 추천요청 기관정보, 공고명 등 입력, 추천방식 선택

(4) 세부품명, 품목별 추정가격 입력(추정가격은 업체별 입찰금액의 기초가 되므로 되도록 기초금액에 가깝게 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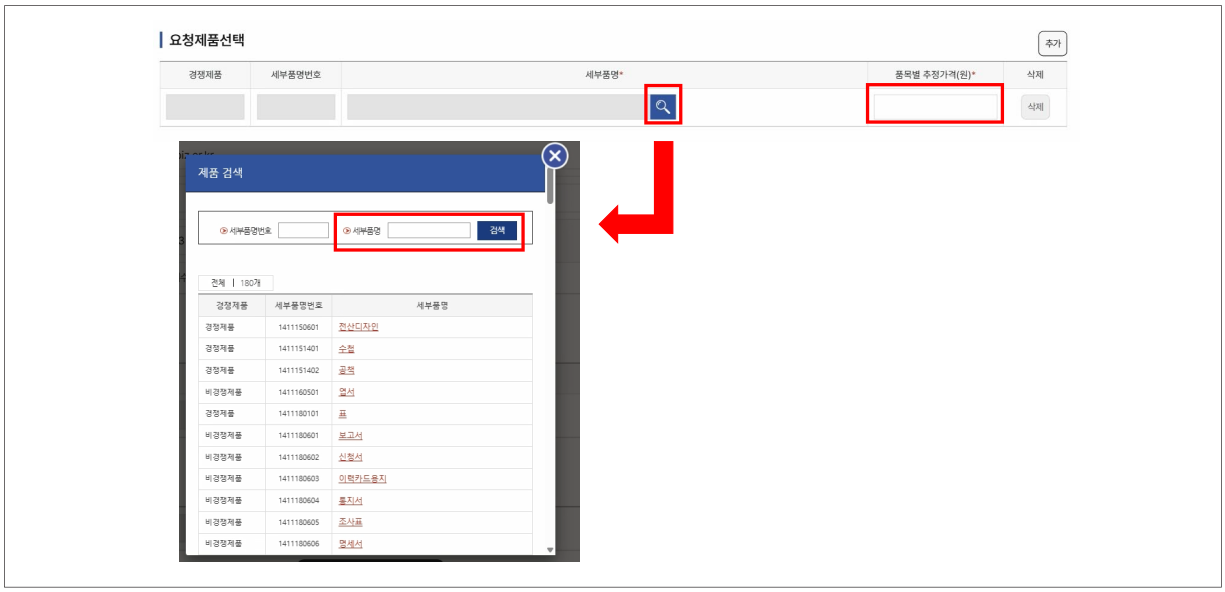

(5) 추천요청 협동조합 선택(해당 제품 추천 가능한 업체 자동 검색)

(6) ❶ 실수요기관 선택·입력 → ❷ 추정가격 합계 자동 입력 → ❸ 추천 기한(수요기관에서 최종 추천받고자 하는 일자) 입력 → ❹ 추천 요청 업체 수 입력(5개 이상) → ❺ 첨부파일(시방서, 내역서 등) 첨부 → ❻ 기타 요구사항 입력 →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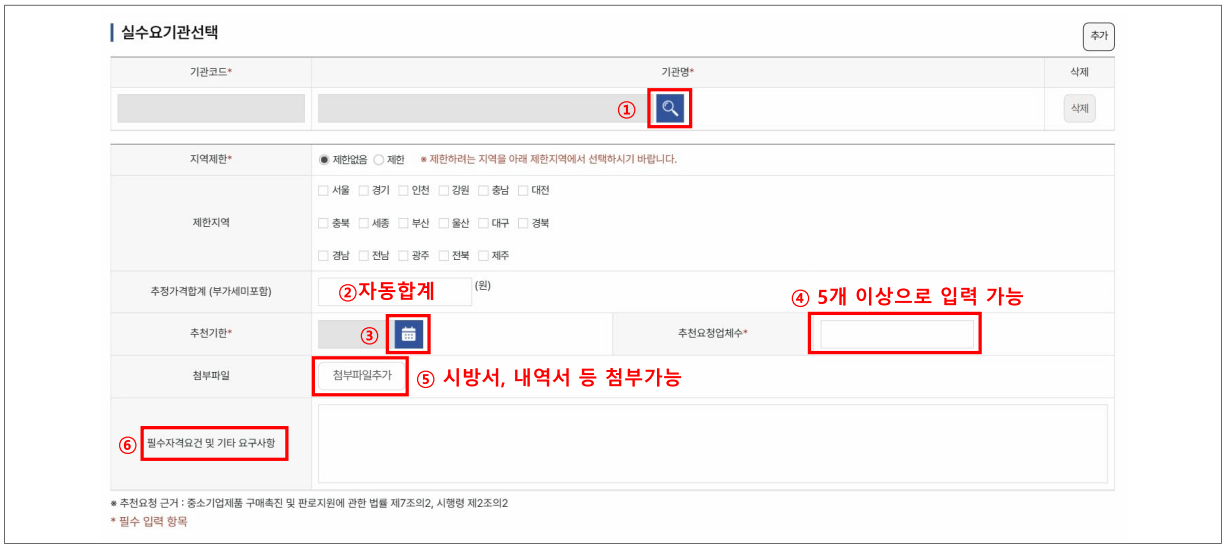

(7) 협동조합에서 추천절차 진행 완료 후 → 발주기관에서 추천받은 업체 대상 나라장터에 지명경쟁 공고 게시(나라장터 게시 상세 절차 12쪽 이하 참고)

2. 제한경쟁에 의한 방법

• 나라장터에 공고 입력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구매 진행

[입찰참가자격 작성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 상세 매뉴얼(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모두)

(1) ❶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 ❷ 상단 메뉴에서 "입찰" 클릭 → ❸ "입찰공고목록" 클릭 → ❹ "신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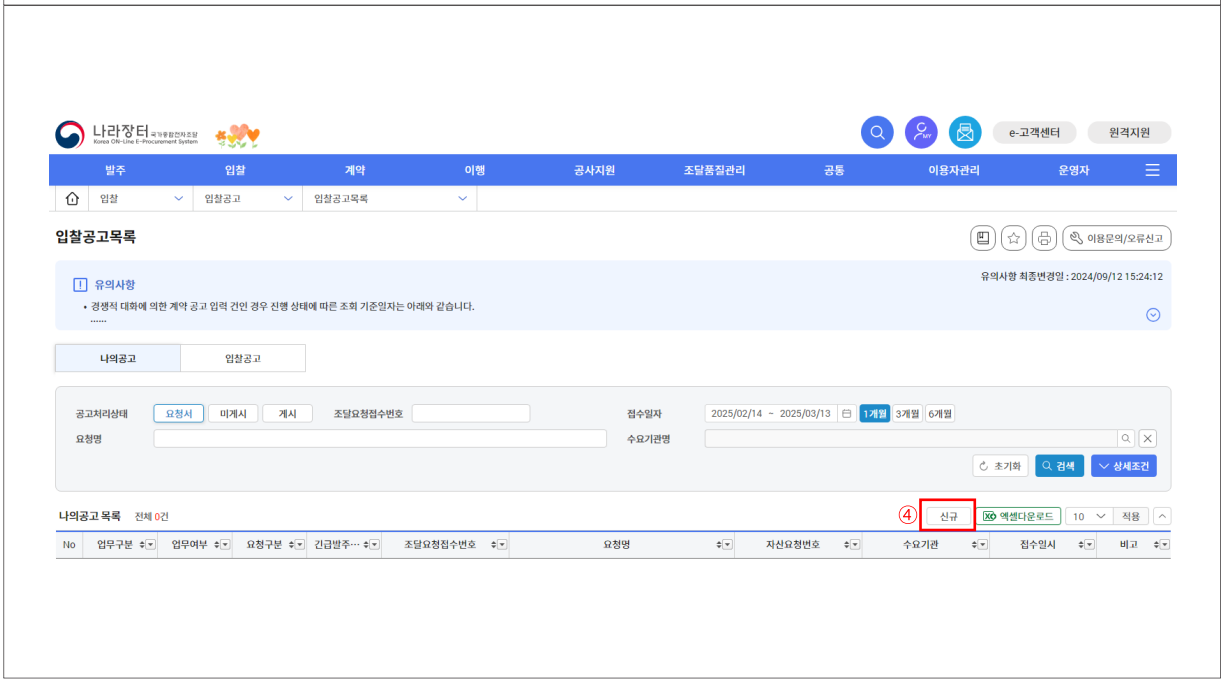

(2)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은 '국가계약법' 선택
-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은 '지방계약법' 선택

[계약방법]

- 조합추천 절차 거쳐 '지명경쟁입찰' 시 계약방법에 "지명경쟁" 선택
-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방법에 "제한경쟁" 선택

[그 외 사항]

- 계약유형: '총액계약'
- 낙찰방법, 낙찰방법세부기준: 발주기관에서 선택한 낙찰방법
- 조항호: 아래 사항 참고하여 입력

구매제품	조항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7조의2 제2항 제1호 ([판로지원법] 중기간경쟁제품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공동사업)
	제7조의2 제2항 제2호 ([판로지원법] 중기간경쟁제품 조합추천 지명경쟁, 공동사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	제2조의2 제1항 제3호 001목 ([판로지원법 시행령] 일반제품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공동사업)
	제2조의2 제1항 제3호 002목 ([판로지원법 시행령] 일반제품 조합추천 지명경쟁, 공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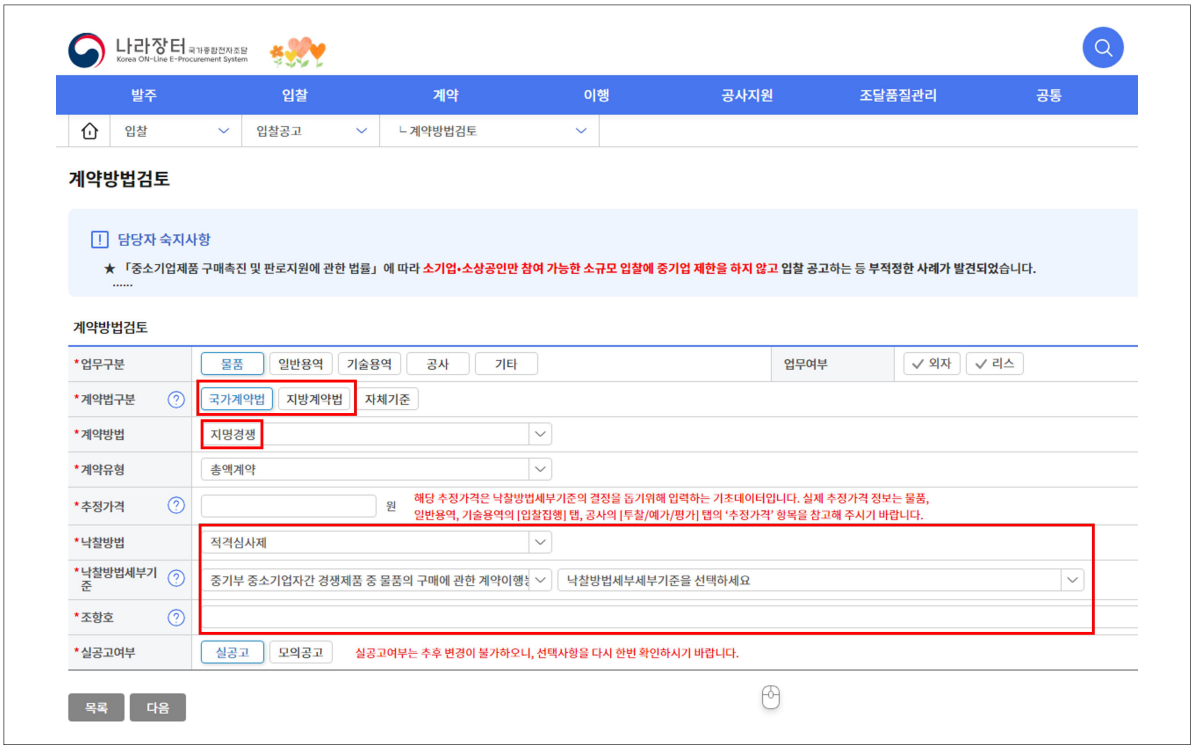

3. 조달청에 위탁구매하는 방법

* 관련 근거: 조달청「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 지침('25.6.9. 개정)

•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구분	적용 금액	적용 대상(공동사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 원 미만 -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위탁 불가능**(수요기관 자체 구매 필요)	❶ 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❷ 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 (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 (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❸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❹ 기술혁신 촉진사업 ❺ 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구매주체·계약금액 구간별 구매방법]

구매주체 \ 계약금액	0원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재경부장관 고시금액 (현재 2.3억 원) 미만	재경부장관 고시금액 이상
❶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국가기관 * 「조달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자체 구매	조달청 위탁구매 * 조달청 내부지침 상 위탁구매 범위 벗어날 경우, 조달청 위탁구매요청 절차 거친 후 기관 자체구매 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1항	자체 구매		조달청 위탁구매 * 조달청 내규 위탁구매 범위 벗어날 경우, 위탁구매요청 절차 거친 후 기관 자체 구매 가능
지방자치단체	자체 구매		
❷ [일반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국가기관 * 「조달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자체 구매	조달청 위탁구매 * 조달청 내규 위탁구매 범위 벗어날 경우, 위탁구매요청 절차 거친 후 기관 자체구매 가능	제도 활용 구매 불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1항	자체구매		
지방자치단체	자체구매		

※ [유의사항] (공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 단가계약된 물품(MAS포함)은 제도 활용 구매 불가

* 근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 **세부 활용방법 안내 매뉴얼**

(1)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 ❶ 상단 메뉴에서 “발주” 클릭 → ❷ “발주목록” 클릭 → ❸ “신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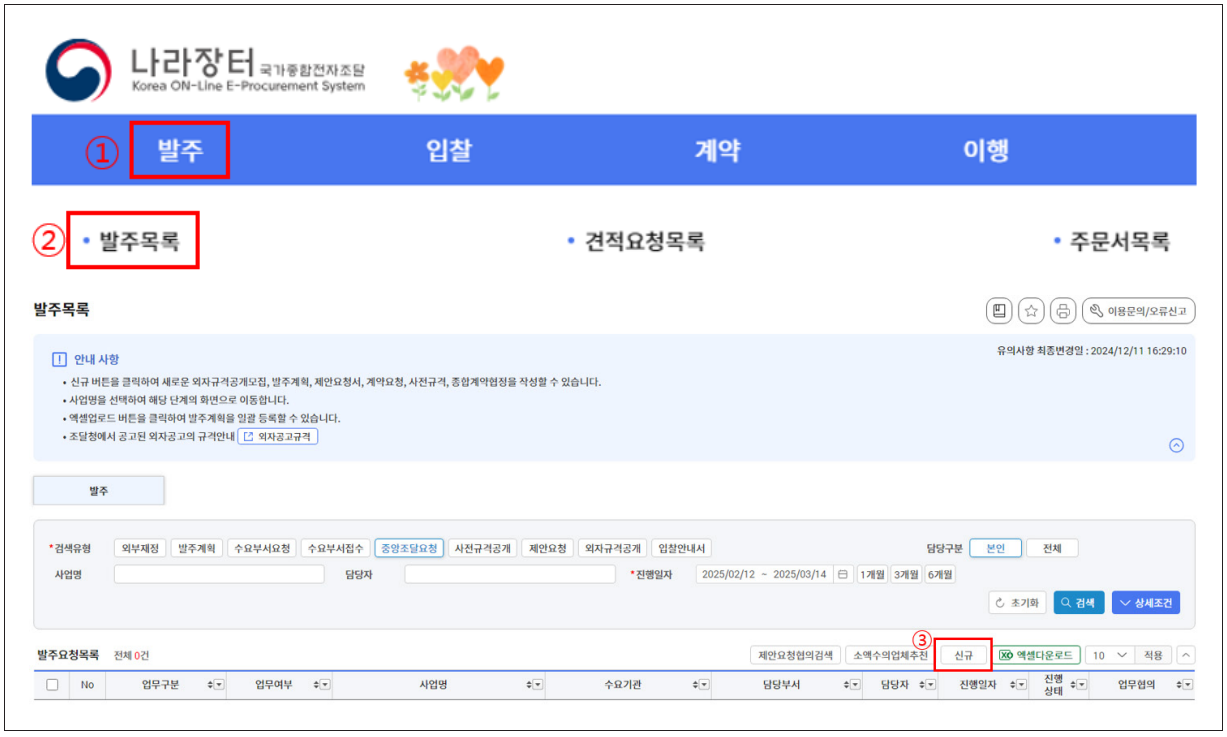

(2) 메뉴 선택에서 “중앙조달요청” 클릭 → “신규” 클릭

(3) “요청기본정보” 메뉴에서 → 계약방법에서 “지명경쟁”(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진행할 경우) 또는 “제한경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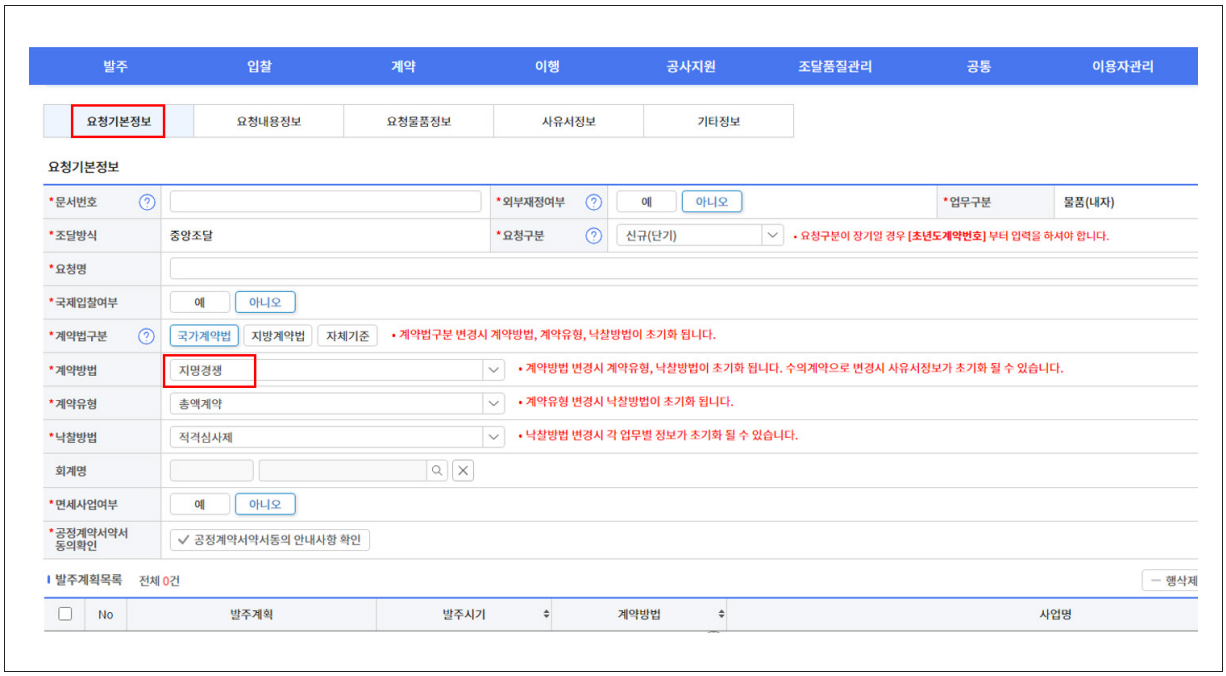

(4) “사유서정보” 메뉴에서 → “공동사업제품 구매정보” 입력 → “예” 클릭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지명경쟁” 중 1가지를 택하여 작성 → 기타 사항 전부 작성 후 저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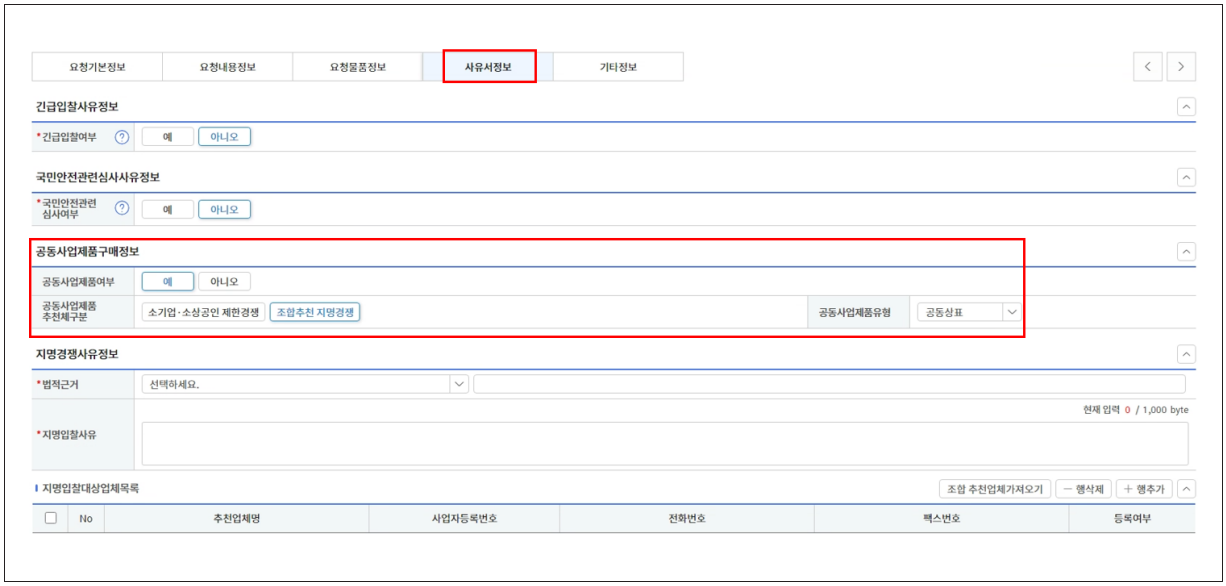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070-4056-7259)

PART

II

자주 하는 질문 (FAQ)

2026

Ⅲ 자주 하는 질문(FAQ)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판로지원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증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조달계약 특례 제도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경우 조합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일반입찰 대비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업체 탐색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시 금액 제한이 있나요?

▶ 공동사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금액(2.3억 원) 미만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제한경쟁방식과 지명경쟁방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3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4 지명경쟁방식을 활용할 경우, 조합 추천 기한은 언제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 추천 기한은 요청일을 제외하고 3일 이후(주말, 공휴일 제외)로 설정하면 됩니다.

5 지명경쟁방식 활용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SMPP)에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규격 공개를 해야 하나요?

▶ 「판로지원법」에는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6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제도 활용 시 반드시 조달청에 구매 위탁을 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재정경제부 고시금액(2.3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3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구매할 경우에도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 위탁구매방식으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조달청 내부 지침에 의하여 제한경쟁은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 지명경쟁은 재경부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로 발주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조달청 위탁구매 요청 절차를 거친 후 발주기관 자체 구매가 가능합니다.

▶ 일반제품 구매 시,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일반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재경부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에 한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구매 시 조달청 위탁구매는 필수사항이 아니나, 기관의 판단에 따라 동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조달청 위탁구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유사한 제품군이 있는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구매해도 되나요?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동일한 제품군(세부품명)이 있더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보유한 제품이라면, 수요처의 선택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 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 제2항과 이 영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 참여 제조 소기업 등을 영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행으로 제품화한 해당 물품 등의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 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계약에 참여하려는 제조 소기업 등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입찰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⑤ 공동사업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 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지정한 종료일까지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소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 수 모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개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
3.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제43조의2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제외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 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장은 각 조합이 제출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합별, 업체별, 품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후 이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추천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장은 확정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제품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또는 제조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동사업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⑪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추천업체 선정 방법)

조합이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추천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앙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선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
2.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업체 선정

[별표1]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구분	위법 또는 부당행위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비고
		1회	2회	3회	
협동조합	• 부적격한 업체를 추천한 경우 • 적격한 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추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2년	영구 퇴출	해당 조합별 제한
중소기업	• 허위의 추천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추천·입찰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년	2년	영구 퇴출	해당 업체별 제한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 산정은 최종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5년간 위반한 횟수를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8호 생략).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1~11호 생략).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참고 2] 공동사업제품 등록 현황 (2026. 4. 30. 기준)

공동사업	조합	제품	문의처
단체표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계 맨홀	02)2280-8221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	02)830-0233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퍼걸러	02)338-1060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1개	02)780-4411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금속제패널	042)483-2511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신호등주	02)2248-0750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온풍난방기	031)282-3593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보행매트, 식생매트	02)6914-6002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공기정화장치 필터유지 관리서비스	02)2654-8895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일반용음식물 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6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7672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태양광가로등, 가로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금속돌망태	02)3471-6232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	활성탄	02)784-9825
	호남남서부김활성처리제사업협동조합	유기산처리제	062)513-5721
특허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자외선살균기,슬러지수집기 등 13개	02)3481-990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지하재방송장치, 통합배선반 등 5개	02)336-3682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공기여과기	02)2654-8895
	한국유무선통신공업협동조합	통합배선반	031)744-470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6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융복합 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한국환경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공동사업	조합	제품	문의처
공동상표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간판, 안내판, 조형물 등 14개	02)2635-2270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응집기, 호퍼, 약품투입기 등 23개	02)3481-9900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2개	02)335-6161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계 맨홀	02)2280-8221
	울산경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	055)238-8840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금속제창	053)357-4427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1
	대한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2)2026-6726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02)830-0233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02)2248-0750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손목시계	02)422-6693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보행매트	02)6914-6002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금속제창	055)902-307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6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0
기술혁신 촉진사업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공기조화기, 약품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 조합 및 제품 신규 업데이트 현황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 '소기업공동사업제품' 메뉴에서 확인 가능

[참고 3] 공동상표 등록 현황 (2026년)

조합명	세부품목	공동상표명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간판, 안내판, 조형물 등 14개	연합회공통 OREAD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응집기, 호퍼, 약품투입기 등 23개	연합회공통 K MACHINE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2개	연합회공통 HI-PRINTING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온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플라스틱계맨홀,	연합회공통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	울산경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DalDave창호
대구경북알루미늄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금속제창	DKAGREEN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GOODTILE
대한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이리링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 사업협동조합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케이앤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EQMAP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STEDI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R & T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KSCIC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KOBO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손목시계	SECRO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보행매트	NOPUL-노풀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금속제창	GAGAWIN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WEZES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elect.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SOPRO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k-parking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Pumpro

[참고 4] 기관별 제도 활용 실적 (2025년)

※ 5억 원 이상 구매 기관, 가나다 順

No	기관명	구매 품목
1	강원 고성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2	강원 삼척시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3	강원 양양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4	강원 원주시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5	강원 태백시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6	경기 광주시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등
7	경기 부천시	안내전광판 등
8	경기 안산시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9	경기 의왕시	안내전광판 등
10	경기 화성시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11	경기도교육청	실물모형및전시물, 안내전광판 등
12	경남 김해시	실물모형및전시물, 안내전광판 등
13	경남 남해군	시설물경비서비스,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14	경남 사천시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15	경남 산청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16	경남 창녕군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17	경남 통영시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18	경남 하동군	안내전광판 등
19	경남 함양군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20	경남 합천군	시설물경비서비스,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21	경북 상주시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22	경북 성주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23	경북 영양군	간판,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24	경북 울릉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25	국립공원공단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26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청소서비스 등
27	대전교육청	교재, 안내전광판 등
28	부산광역시	간판, 시설물경비서비스, 실물모형및전시물, 안내판, 조형물, 현수막 등
29	부산교육청	금속제창 등
30	산림청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31	서울특별시	간판, 건물청소서비스,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안내전광판, 조형물 등
32	인천교육청	사물함, 책상, 칸막이형열람대, 캐비닛 등
33	인천교통공사	공기여과기 등
34	전남 보성군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35	전남 신안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No	기관명	구매 품목
36	전남 함평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37	전남교육청	책장, 회의용탁자 등
38	전북 군산시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39	전북 정읍시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40	전북 진안군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41	충남 공주시	시설물경비서비스,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42	충남 금산군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43	충남 농업기술원	식물생장조절실,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44	충남 부여군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45	충남 서천군	건물청소서비스 등
46	충남 예산군	시설물경비서비스 등
47	충남 천안시	안내전광판 등
48	충남교육청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49	충북 보은군	시설물경비서비스, 실물모형및전시물 등
50	충북 영동군	실물모형 및 전시물 등
51	충북 진천군	시설물경비서비스, 실물모형및전시물, 안내전광판 등
52	충북 청주시	계장제어장치, 안내전광판 등
53	한국수자원공사	약품투입기 등

[참고 5] 제도 활용 우수 사례

❶ 조합명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❷ 세부품목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품목
❸ 활용기관	경기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은 196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12개 조합원사와 함께 다양한 통신장비제조업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15년도부터 11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특허권을 활용한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물품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브랜드를 기반으로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조합의 특허권 활용 공동사업에는 5개 제품에 총 42개사가, 공동브랜드 활용 공동사업은 2개 제품에 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도에는 약 130억 원의 공동사업 실적을 달성하였다.

활용 우수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사업제품 구매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검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큰 이점이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기술 향상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특허 적용된 통합배선반 제품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워크숍

EMU(Environment Monitoring Unit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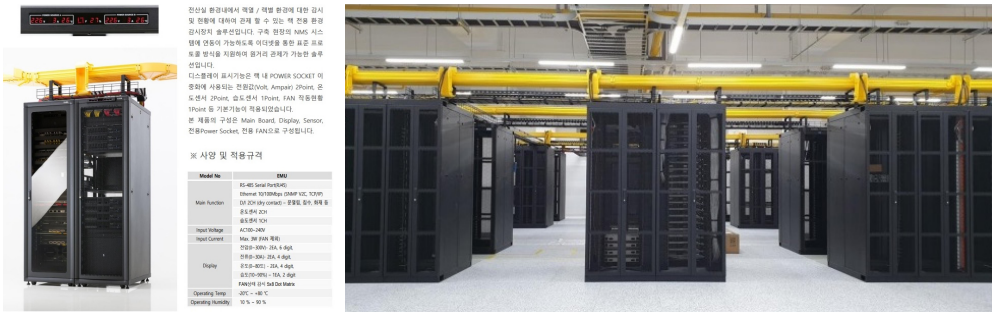

❶ 조합명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❷ 세부품목	실물모형 및 전시물
❸ 활용기관	법무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995년 설립되어 188개 조합원사와 함께 전시공간 기획·연출 및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등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 '공공전시서비스' 단체표준을 제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단체표준 인증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사들은 품질 수준과 사업수행 역량을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는 수주가 쉽지 않았던 공공조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실제 계약 수행과 납품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품질관리와 사업운영 역량을 더욱 제고하고 있으며, 실제 공동사업 참여를 통해 규모를 확대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공공전시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을 받아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사는 42개사이며, 이들은 지난 6년간 총 224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2020년 12건으로 시작한 계약 실적은 2025년에는 총 63건까지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한국갤럽을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사업 운영과 품질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공동사업 관리체계에 반영함으로써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 담당자가 개별 업체를 탐색·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검증된 참여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체표준이 적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출설계

공동사업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공동사업 대표자 워크숍

단체표준 활성화 실무자 워크숍

[참고 6]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활용 독려 공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및 조합추천제도 안내

1. 평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우리부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판로지원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정보조회-제품정보-소기업공동사업제품

나.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나의업무-소액수의계약추천-대상제품현황

3.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품 조달 시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조합추천 요청 방법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21조의2 및 제43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판로지원실(02-2124-3242~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수신자 국가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행정서기	**전대산**	행정사무관	**박철우**	판로정책과장	전결 2026. 4. 13. **이지호**
협조자					

시행 판로정책과-954 (2026. 4. 13.) 접수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 www.mss.go.kr

전화번호 044-204-7492 팩스번호 044-204-7549 / jdsan@mail.go.kr / 대국민 공개

2026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K-BIZ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이하는 가치